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29
----------	-------

발의연월일 : 2022. 3. 31.

발 의 자 : 박완수 · 이종배 · 김정재
김예지 · 배준영 · 김용판
김성원 · 이명수 · 최형두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는 공공기여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에 걸쳐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에 대한 설치주체가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공공이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민간과 달리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부에 위치하여 설치주체가 이원화된 공공시설등은 정상적인 공정관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시설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설치·제공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걸쳐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까지 설치·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시설등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 . 다만, 공공시설등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